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5 - 037호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년 3월 7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 지원내용: 초기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비 및 창업공간 지원

(최대 5천만원~최소 1천만원) 시제품(서비스)제작,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특화프로그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mark>입학식 및 인사이트 트립)</mark>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마스터즈 강연

(경기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과 홍보, 투자·판로 개척

+

(<mark>임팩트 쇼케이스)</mark> 기업 성과 공유

육성프로그램 (운영기관)

(월 1~2회 이상)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밀착·전문멘토링

(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 선도기업 네트워킹

(교육·워크샵 등, 총 20시간)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예비)창업기업 모집·선정, 사업비 지급, 판로 개척·투자유치·전문가 연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밀착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 **협약기간**: 협약일~2025년 12월까지

+

2 │ 신청자격 및 선정규모 □

□ 신청자격: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 선정규모: 예비트랙 10개사(팀)+성장트랙 30개사 총40개사

	구분		지원대상 요건 설명					
예비 트랙	예비창업기	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공통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의 내 창업기업 ②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사회적경제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u>제2조 3항 가~바목</u> 에 해당하는 조직					
성장 트랙	시하더격제조지	이종 창업	■ ①「부가가치세법」제8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 ②「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동종	* 이종창업 여부: 동 공고문 6. 유의사항 참고 ①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유지하고자 하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 조건 ① 또는②와 ③충족 필요 ②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참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내용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1. 일반유흥주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56211)
 - 무도유흥추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56212)

 - 2. 구도표 8 다음((도프 근도 Michael H. 30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코드번호세세분류 :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타 사업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교육,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자금)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
- 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 중복참여 불가 사업
 - 1. (2023년)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사업, R&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기업)
 - 2. (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R&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기업)
- 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 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시제 품 제작비 등)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
-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⑨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⑩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비 및 밀착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구분	세부 내용								
		•	-	사업모델 수립 원, 평균 2천만원	등에 소요되는 (내외)	사업비(공급가	기준)		
	< 사업화자금 차등배정(안), 단위 : 원 >								
	구분	최초 배정		중간 배정	총합	배정기업 수		소계	
	S등급 A등급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50,000,000	5		0,000,000	
	B등급	19,000,		12,250,000	31,250,000	8		0,000,000	
	C등급	13,000,		8,000,000	21,000,000	10		0,000,000	
	D등급 합계	7,000, 94,000 ,		5,000,000 60,250,000	12,000,000 154,250,000	16 40		12,000,000 12,000,000	
		-				- 1			
	※ 배정병 결과0	방식 : ① 사업에 따라 1차	겁계획 사업비	서 내 신청금액 차등 배정 → (범위(최대 3천만원 ② 중간평가(*25.7†	!~최소 7백만원) 월)를 통해 2차 /) 내에서 사업비 기	대면심사 가등 배정	
				< 비목·세	목 정의 및 기취	준 > 			
창업기업	비목	세목			정의		_	집행기준	
사업비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 사 ■ 사	업화 과정에서 : 업과 직접적으로	변경 등 사업화 운영 등에 소요 소요되는 소모성 ! 관계된 기자재 . 관계된 기자재의	재료구입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총 사업비의 40% 이 내	
		외주 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 창 사 ■ 창 운	업기업이 자체적 업화 추진에 소. 업기업의 제품·· 영 및 유지 등을	변으로 과업을 (요되는 외주 용약 서비스·사업 홍보 위해 소요되는	행할 수 없는 취비 및 광고, 홍 <u>박</u> 비용(소모성 비	경우		
	운명	일반 운영비 여비 활동비	■ 국	내 출장 경비(실	요금 등 운영에 됩 비정산 원칙) 한 문헌 구입, 사 네		보사	월30만원 한도	
	***************************************				기도사회적경제원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및 운영기관에서 : 승인 → 교부, 건	지급주 별 승인	기에 맞춰 후 지급)	
특화				별도 교육 안내 : 제고 드 트 :	^{예성} 화프로그램 제	 			
극와 프로그램					각프도그램 제 경 경기사회적경제박		ᆌ이스	등	
으로그 A 역량강화					등 역량강화프				
프로그램					ㅇ ㄱㅇㅇㅋㅡ 스모델 분석 및	•	-0.1 L	⊔ -1 2 1 <i>)</i>	
자원연계	■ 선·후비	배기업-창업	기획		관(VC)의 미팅				
밀착 멘토링		. 담임멘토 수) 협약기긴	_		모델 구축 지원	을 위한 밀착	·멘토링	J 제공	
전문 멘토링		!(인사·노무 수) 협약기긴		•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	결 지원	4	
공간제공	■ 권역별		-·남투	부) 창업전용 공	공간 제공				

4 신청 및 접수

- □ 신청·접수 기간: <u>2025. 3. 7.(금) ~ 3. 28.(금) 16시까지</u>
-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www.gsic.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별첨.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예비트랙	성장트랙	제출방법	비고
1	참여요건 자가진단표	제출필요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	출필요	압축하여 , &	
3	가점 증빙서류	해당	당시 제출	1. 사업신청서 탭에 업로드	5. 심사 및 선정 참고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해딩	당시 제출		
5	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제	출필요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	출필요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7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필요		압축하여 , &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8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Х	제출필요	2. 동의서 탭에 업로드	
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X	제출필요		
10	사업자등록증	Х	제출필요		
11	법인등기부등본	Х	법인만 해당		
12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	Х	해당시 제출	각각 분리하여,	
13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	해당시 제출		저장 후 압축하여, &	
14	기타 증빙서류	해당	당시 제출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15	결산재무제표	Х	제출필요	. —	2021년~ 2023년
16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X	제출필요		

- *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절대 불가
- ** 발표자료는 심층인터뷰 대상자 별도 제출 안내 예정

5 심사 및 선정

□ 심사 절차: 총 3단계 심사(서면→심층인터뷰→대면)를 통해 최종 선정

①요건검토	②서면심사		③심층인터뷰	④대면심사	⑤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	사업계획서 심사 1.5배수 선정	D	대표자의 창업의지, 사업회실현 가능성 등 파악 대면심사 점수 20% 반영	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

※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

□ 심사방법

- ① (요건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면심사)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을 선발,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

< 서면심사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 2022년~2025년 도내 시·군 사회적경제지원 사업 참 <u>여자</u> 로 시·군의 추천서를 득한 자	3점	서식 3-1. 추천서 시·군 날인 필수 제출
	■ 신청기업(팀) 대표자가 2022년~2025년 도내 시·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최소12시간 이상) 수료자	5점	서식 3 시·군 발급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가점 (최대	■ 신청기업(팀) 대표자가 2022년~2025년 도내 시·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교육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부족한 시간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LMS 교육(GSIC클래스)으로 추가교육시간 인정	2점	① 서식3시군발급교육수료증 ② LMS교육 수료증 제출 ※ ①,② 모두 제출
8점)	■ 2023년~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LMS교육(GSIC클 래스) 12시간 이상 시 수료시	2점	LMS교육 수료증 제출
	■ 2023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비기너캠프 참가자	3점	수료증
	■ 2023~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수료팀	3점	수료증

-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
 - ③ (심충인터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사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창업의지,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및 대면심사 점수에 반영(20%)
 - ④ (대면심사) 소셜미션, 창업아이템 경쟁력,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발표 5분, 질의응답 7분)

* 대면심사 시,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대면심사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가점 (최대 1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업(자)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1점

⑤ (최종선정) 대면심사 고득점사 순으로 운영기관·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

*사업비: 대면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심사지표

○ 요건검토 내용

구분	내용	검토결과
	■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적합 / □ 부적합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 적합 / □ 부적합
검토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자가진단표 제출 여부	□ 적합 / □ 부적합
	■필수 제출서류 3개이상 미제출 여부	□ 적합 / □ 부적합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항목

구분	내용	배점					
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구체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 가능성 ■ 핵심고객 정의의 구체성 및 고객 확보 전략	20					
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	 시장규모의 타당성 및 도입과정에서의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현재 시장 내 경쟁사는 누구인가? 경쟁자 대비 차별성 및 경쟁우위 확보 여부 						
창업아이템 (해결방안)	■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해결방안의 차별성 및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가능성	15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운영 가능성 ■ 사업 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 보유여부 ■ 지원 후에도 추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20					
핵심역량	■ 비즈니스모델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 및 사업의 도입·확산 가능성	10					
마일스톤	■ 협약기간 내 사업진행 및 성공을 위한 계획 적정성 등	10					
기대효과	■ 계획대로 사업 추진 시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 해결책이 창출할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5					
사업비 사용계획 (예산 타당성)	■ 예산 설계의 타당성과 항목의 적절성 ■ 시장가격 대비 예산의 적정성	5					
	합 계	100					



- 요건검토: ~2025. 4. 4.(금)
- 서면심사(결과발표 포함): 2025. 4. 7.(월) ~ 9.(수)
- 심층인터뷰: 2025. 4. 10.(목) ~ 11.(금)
- 대면심사: 2025. 4. 15.(화) ~ 16.(수)
- 최종선정: 2025. 4월 말(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 2025. 5. 12(월) ~ 5. 13.(화) 예정

6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 유의사항

○ 사업자 2개 이상 보유 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참고) 가능 기준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 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이종·동종업종 판단 기준

- 한국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소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경제부문-표준분류-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자료실-최신개정-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예비창업자: 휴대폰 본인인증, 사업자: 사업자번호 인증)이 가능한 본인(또는 신청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④ 심사 중 유의사항

○ 전 심사과정에서 (예비)대표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야 함

5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 된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 사업부진, 사회적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시,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 재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지,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우리은행 보조금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해 야 함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공정)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노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 (납세)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 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보조금 반환(사업부서/수탁기관),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기업육성과/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 원회 의뢰)

6 선정자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운영 및 회계)」,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 실히 노력해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3년간 사후성과 등),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밀착멘토링· 특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등)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운영 및 회계)」을 적용함

7 문의처

□ (총괄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

- (전화번호) 031-258-3282, 3283, 3285
- (E-mail) gsic_impact@gsic.or.kr ※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

붙임

창업기업 최종평가지표(안)

	구분			최종평가 지표
			최우수	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신청요건 적합) 완료
예		완료	우수	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비트랙	예비창업자		양호	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 택		실패 성실실패		① 법인 미설립 or ②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 사업비 유용 등 제 재사유 발생 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외부환 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
			최우수	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고도화) 완료 and ③ 지원사업비 20% 이상의 매출 또는 신규 고용창출 and 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
성장		완료	우수	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고도화)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
성장트랙	사회적경제기업		양호	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고도화) 완료
		•	실패	①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②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③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 사업비 유용 등 제 재사유 발생 시
		성·	실실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외부환 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

구분					최종평가 지표
				최우수	① 신규 이종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완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이 창 이 창	완료	우수	① 신규 이종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신청요건 적합) 완료
				양호	① 신규 이종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신청요건 적합) 완료
				실패	① 신규 이종업종 법인 미설립 or ②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 사업비 유용 등 제 재사유 발생 시
			성 <i>'</i>	실실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외부환 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
성장트랙		동 종 유 지		최우수	①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설립(개인사업자 폐업필요) (법인사업자) 법인유지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완료	우수	(4)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완료 (1)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설립(개인사업자 폐업필요) (법인사업자) 법인유지 and (2) 시제품 구현 완료 and (3)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4)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신청요건 적합) 완료
				양호	①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설립(개인사업자 폐업필요) (법인사업자) 법인유지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신청요건 적합) 완료
			•	실패	①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미설립(개인사업자 미폐업) ②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③ 시제품 구현 불가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 사업비 유용 등 제 재사유 발생 시
			성실실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외부환경 변화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

* 최종평가지표는 변경가능성 있음

※ 유의사항 ※

- 법인설립(유지) 기준은 경기도 내 법인설립(유지)임
- 모든 평가지표 내 성과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함
- 실패(또는 성실실패) 시 사업비 전액환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